

##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 공고

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『1차연장』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8월 13일  
특허청장

### 1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

-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

구분	연장기간	해당대상
1차연장	1년	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
2차연장	2년	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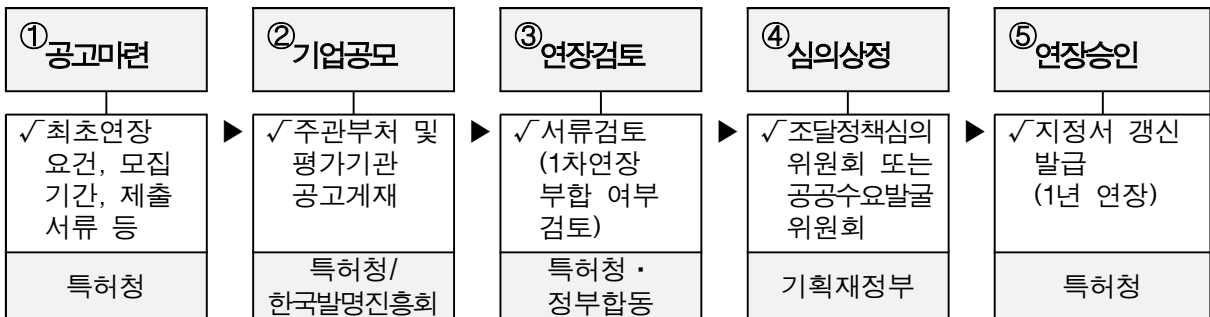
- ※ 관련근거 :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제2항
- ※ 기획재정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의2

### 2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(1차연장)

-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(舊.FT3)을 보유한 기업

※ 신청대상 : 지정기간 만료일 2024.12.23.

- 혁신제품 1차연장 프로세스



### 3 신청 자격 요건(1차연장)

○ 아래의 '가'항 부터 '라'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

- 가.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
- 나.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
- 다. 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
- 라.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

구분	항목	세부내역
가	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(최소 1건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</li> <li>✓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</li> </ul>
나	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(최소 1건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</li> <li>✓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</li> </ul>
다	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에 한함</li> </ul>
라	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지정 후 조달적합성 절차로 인한 지정 인증서 발급지연에 한함(舊 FT3 지정제품 한정,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)</li> <li>✓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고시 대상(중기부) 제품으로서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</li> <li>✓ 기타 불가피한 사유(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)</li> </ul>

○ 다만,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

- 가.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
- 나.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
- 다.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
- 라.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

구분	항목	세부내역
가	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</li> </ul>
나	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유형 I(舊 FT3) :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)의 기간만료, 등록취소, 양도, 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</li> </ul>
다	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</li> </ul>
라	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혁신제품 지정제품(물품식별번호) 중 일부라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</li> </ul>

#### 4 신청 서류(1차연장)

○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,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

번호	구분		필수여부	비고	
1	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		필수	붙임1	
2	서류제출 신뢰서약서		필수	붙임2	
3	신청자격 증빙자료 (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)	3-1 <sup>비고1</sup>	납품실적목록 *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	해당 시	붙임3
		3-2 <sup>비고2</sup>	구매계약서 *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	해당 시	-
		3-3 <sup>비고3</sup>	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	해당 시	-
		3-4 <sup>비고4</sup>	구매확약서	해당 시	붙임4
4	혁신제품 지정 인증서		필수	-	

비고1)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·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

(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 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)

비고2)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

비고3) 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

비고4)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,

☞ FT3 혁신제품이며,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

☞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로서,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

#### 5 신청 방법(1차연장)

○ 신청기간 : 본 공고일로부터 **2024. 8. 23.(금) 18:00** 까지 접수 완료분  
(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검토)

○ 신청방법 : 4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**접수 e-메일**로 제출

신청서류 접수처
fast@kipa.org

○ 문의처

신청접수 관련 문의처
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/ 혁신제품 담당 / 02-3459-2807

[붙임1]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

## 혁신제품 지정기간 (1차연장) 신청서

혁신제품명						
혁신제품 지정번호			혁신제품 지정기간			
회사개요	회사명			법인번호		
	주 소	(□ - )				
	행정 담당자	직위/성명			부 서 명	
		전화번호			FAX번호	
기간연장 신청사유	아래 4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'√' 체크 할 것 (중복체크 가능)					
	번호	지정기간 연장 '신청' 사유			해당여부	
	1	지정기간 동안 국·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			( )	
	2	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			( )	
	3	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			( )	
4	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			( )		
기간연장 제외여부	아래 2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'√' 체크 할 것 (중복체크 가능)					
	번호	지정기간 연장 '제외' 사유			해당여부	
	1	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			( )	
	2	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			( )	
3	혁신제품 지정제품 중 우수조달제품(조달청)으로 지정된 경우 (물품식별번호 기준)			( )		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신청합니다.

2024 . . .  
 업 체 명 :  
 대표자명 : (인)

특허청장 귀하



**[붙임3] 납품실적목록**

※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곤란한 경우(예 : 혁신장터 미등록 구매실적, 해외 공공조달실적 등)에 한함

**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**

번호	물품식별 번호	규격명	수량	금액(원)*	납품처		납품일자	비고
					국내/해외	기관명		
1								
2								
3								
4								
5								
6								
7								
8								
9								
10								

\* 해외실적의 경우 제출일 기준의 원화 환율로 산정하여 기입

주) 혁신제품 지정기간(3년) 내 납품실적에 한하며,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**물품  
납품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,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**를 붙임자료로  
첨부할 것 (단,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등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함)

**[붙임4] 구매확약서**

## 혁신제품 구매확약서

- 동 자료는 혁신제품 연장 심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수요기관 구매확인 목적으로 활용

구매확약 수요기관	기관명	
	담당자명	
	연락처	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,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, 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 및 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
동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, 관련 내용에 따라 작성 자료 등이 심사 절차에 활용함에 동의하십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

본 기관은 아래 혁신제품의 규격,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임을 확인하여 **향후 구매를 희망합니다.**

혁신제품	(혁신제품 지정번호) (혁신제품명)
기업정보	(기업명) (사업자등록번호)
구매확약 희망규격	(규격명) (물품목록번호)
활용목적	자율기재

※ 본 구매확약은 별개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시 참고자료로 활용

2024년    월    일

기관명 :

기관장명 :

(인)

**특허청장 귀 하**